

# 環境汚染規制에 관한 國際法的 研究

河 在 煥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n the Law of Nations

*Ha, Jae-Whan*

目 次	
一. 序	4. 海洋汚染
二. 環境汚染과 國家責任問題	三. 環境汚染規制를 위한 制度的 檢討
1. 水質汚染	1. 汎世界的 機構과 地域的 機構
2. 大氣 및 宇宙汚染	2. 國際法規과 國內法令과의 連繫性
3. 核物質에 의한 放射性汚染	四. 結 語

### Summary

It was quite obvious that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knowledge for satisfying a reasonable creatures' wants has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history. But nowadays the through investigation of highly scientific knowledge, especially the enlargement of a nuclear atomic energy for its using, is attendant upon the pollution and the demolitions of the environment. Concurrently it is in severe jeopardy mens survival itself as well as the breakdown of the Ecosystem.

Although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all sorts make an attempt for the protection and th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by virtue of the enlarg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nonrecognition of unsatisfactory effectuation is a task of great difficulty.

## 一. 序

오늘날 科學技術의 發展은 環境破壞 및 汚染을 결과시키는바 그 量的 擴大, 地域의 一般化, 內容의 複雜化 및 被害의 深化라는 傾向이 加重化됨으로써 人間의 食物을 감소시키며 건강 및 生活環境을 害치는 重大한 事態를 빚고 있다 할것이다. 그리하여 環境의 汚染問題에 關하여 關心이 높아지게 된것은 이른바 生態學(Ecology)을 中心으로 世界到處에서 本格的으로 論議되기 始作하여 超國家的인 次元에서 問題視되기에 이르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特히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保障하고 “環境保全을 確保”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原因에 의한 環境汚染의 解決策을 講究할 必要性이 切實함은 勿論이나 單純한 國內的인 措置만으로는 永續的이고 效果的인 規制 및 防止가 至難하다는것도 輕視할 수 없는 事實이라 할것이다. 왜냐하면 環境汚染의 大部分은 超國家的(Transnational)인 性格의 것이어서 國內法과 國家間의 協力에 呼訴하는 國際法的인 規制를 必要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水質汚染으로서의 內水汚染과 海洋汚染 및 環境汚染에 대한 國內法으로서의 立法的 乃至는 行政的인 對策은 勿論 國際法的인 規制措置의 強調는 當然하다고도 할 수 있을것이다. 特히 今世紀에 즈음하여 産業化·都市化와 더불어 科學兵器의 發達과 國際的인 交通의 擴充은 그것이 陸路이든 海路이든 또는 空路이든 間에 一國이 直接間接으로 他國에게 水質로서의 海洋汚染은 勿論 大氣 및 宇宙汚染과 더불어 核物質에 의한 放射性 汚染으로서 換言하면 大氣中에 混合되어 있는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산화질소와 같은 氣體로서의 微立子の 경우나 아니면 水中에 포함되어 있는 産業廢棄物 水銀 및 납과 같은 鑛物性 物質의 경우나 더욱이 陸上의 固體廢棄物(solid wastes), 海上에서의 海洋의 油類 및 放射性 物質의 境遇에서 損害 乃至 權利侵害를 誘發할 危險이 있거나 또는 侵害했을 경우 “各者는 自己의 것을 利用함에 있어 他者에게 害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는 로마 法諺으로서 一般國際法上的의 原則에 비추어 國際法的 國家責任負擔을 強調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므로 本論文은 國際法的 立場에서 比較的 最近에 發展을 加速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科學發達에 따른 環境破壞로부터 人類를 求하기 위한 보다 實効的인 國際環境法(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을 中心으로 環境破壞 및 汚染規制를 위요한 慣習國際法과 條約國際法의 特性的인 內容 및 制度上的 問題點을 論議할가 한다.

## 二. 環境汚染과 國家責任問題

自然環境의 汚染問題는 오래前부터 人類가 自然과의 關係에서 理解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關心의 主要한 爭點으로 부각되기 시작한것은 科學技術의 發達에 힘입은, 産業의 高度性에 의한 環境의 破壞에서 부터라고 할수 있음과 同時에 이러한 環境破壞 또는 汚染에 대한 國際法的 規制가 強力히 要請된때 부터라고 할 수 있을것이다. 特히 各種 知識의 보급과 발달에 따른 환경파괴 및 오염의 결과 人間生存 그自體에 대한 挑戰的 狀況意識을 작성하고서 부터 환경오염 乃至는 파괴를

극복할려는 國際環境法이라는 하나의 概念을 定立하게 되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을 規制함과 동시에 法的 效果에 의한 環境破壞의 克服은 慣習上의 立場에서 國際水路와 國際湖水를 中心한 國際法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海洋法分野에서도 可能하다할것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國際環境法の 基礎的 形成은 慣習國際法에서 부터 出發할 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汚染防止를 위한 基準 乃至 規則確立이란 測面에서 검토하는 경우는 오히려 그같은 形成에 기여한 一般國際法上의 原則으로서 國家責任에 관한 原則 公海自由의 原則 및 領土主權에 관한 原則의 기여도를 더욱 強하게 理解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sup>1)</sup> 왜냐하면 關係當事國의 同意없이 國際河川의 方向이나 河床을 變更하여 自然的 狀態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法的 義務의 條約 即 일찌기 隣接沿岸國間에 밀접하게 얽혀있는 利害關係의 調整에 依하여 國際水路의 使用이 可能하게끔 作用한 善隣의 原則(Principle of Good Neighbours) 또는 權利的 濫用禁止의 原則(Principle of Abuse of Right)에 기초한 法的 義務의 締約關係에서 明白히 理解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sup>2)</sup> 그리고 海洋의 경우 公海自由의 原則에 근거하는 限 海洋에서의 生物資源採取의 自由謳歌는 오히려 合理的인 것이며 慣習國際法上 海洋汚染의 規制的 作用은 非合理的인 것이라고 이해되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公海自由의 原則이 他國의 公海使用의 自由를 害치는 行動을 할 權利를 各個別國家에 부여한것이라고는 볼수 없다면 公海上의 汚染은 오히려 各 個別國家가 防止義務를 保有하고 있다는 理論的 論理를 成立시킬수도 있을것인즉 1920년경에서 부터 油類汚染에 대한 人間生存의 환경검토와 연구가 심각하게 論議되고서 부터 그리고 1967년의 토리·케니언號(Torrey Canyon) 事件 및 1978년의 아모코 카디즈號(Amoco Cadiz) 事件<sup>3)</sup>과 核에너지의 開發에서 派生되는 環境 파괴 및 汚染의 問題, 核추진선박의 통과로 인해 放出되는 海洋汚染과 배상문제등에서 核實驗과 核에너지使用의 合法性에 關하여 法的 義務라는 形式의 本格的인 論議와 批判研究가 加一層 增加되었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특히 1909年 美國과 캐나다의 境界水域조약(Boundary Waters Treaty)에서 兩國의 境界水域을 汚染하지 않을것이라는 것에 대한 合意形式<sup>4)</sup>이나 公平使用原則(Principle of Equitable Utilization)을 促求한 國際河川의 水質汚染은 勿論 下流의 利用度를 훼손하는 行爲의 禁止意見은 注目해야만 할것이다. 그리고 國際司法裁判所의 콜푸(Corfu) 海峽事件<sup>5)</sup>에서 宣言한 原則 即 一國이 他國에 대하여 作爲나 不作爲에 依하여 損害를 끼쳤을 경우 國家의 國際責任判定는 環境 파괴 및 汚染으로 인한 損害에 直接的인 영향력의 提示는 아니라 하더라도 直接間接으로 他國의 財産이나 人命에 대하여 입힌 損害에 대하여 準用可能性을 暗示하는것에서 環境 파괴 및 汚染에 대한 問題檢討와 國家責任問題는 매우 密接한 連關性이 있음을 留意할수 있을 것이다.

1) Ian Brownlie; A Survey of International customary Rul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eclaff and Uton ed p. 1.

2) 이를테면 1816년의 "prussia"王과 "화란국"王間에 체결된 境界조약과 1863년의 "벨기"와 "화란"사이에서 체결된 Meuse江의 규제조약 등이다.

Ludwick. A. Teclaff: Interational Environmental Law (1974) p. 229~30.

3) 柳炳華: 國際法總論, 一潮閣 1983. p. 546.

4) U. S. T. No. 548, 境界水域조약 제4조2항 參照

5) Corfu channel Case (Merits), I. C. J. Reports. 1953.

## 1. 水質汚染(water pollution)

水質汚染에 관한 國際環境法の 始初는 國際水路法에서 이해할수 있는바 그 기본적인 원리는 19世紀와 20世紀初에 걸쳐서 영향력이 있었던 「절대적 영토주권이론(Theory of Absolute Territorial Sovereignty)」에서 검토될 수 있다 할것이다. 換言하면 1895年 美國의 檢察總長 Judson Harmon의 Mexico와의 Rio Grande江의 水路를 둘러싼 紛爭의 答弁 主張에 依하여 “국가는 自國領을 貫流하는 國際河川의 水路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처분할 무제한의 권리를 갖는다”는 Harmon doctrine의 主張을 答습하는 데서 이해될수 있다 할것이다. 그러나 뒤 이어 主張된 制限的 領土主權의 原則(principle of Limited Territorial Sovereignty)에 대한 肯定的 傾向의 추세에 따라 더욱 發展의 効果를 加速하였다고 이해하는것이 오늘날의 立場이라는 것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할 것이다\* 即 1909년의 美國과 캐나다國間의 境界水域條約 1922년의 독일과 덴마크間의 水路協約<sup>6)</sup>이나, 1959년의 美國과 캐나다 國間의 St. Lawrence 水路協定<sup>7)</sup> 1957년의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間의 魚族生態에 有害한 物質과 廢水를 國際河川에의 流出禁止를 內容으로 하는 “漁業協定<sup>8)</sup>等에서 쉽게 이해할수 있겠지만 더욱 최근의 것에 접해보면 1972년의 美國과 캐나다國間의 五大湖 水質保全協定(Great Lakes Water Quality Agreement)에 의한 水質保全目標와 計劃(Water Quality Objective and Programs)에서 유도되는 各種의 規制措置<sup>9)</sup>에서 明白하다 할것이다. 또한 Stockholm에서 1972년 開催된 UN 人間環境會議의 人間環境宣言(Declaration Human Environment)에 관한 諸原則等에서도 明白하다 할것이다. 即 1966년 Helsinki에서 開催된 52次 會議에서는 “모든 流域國家는 國際河川을 使用함에 있어 自國領域內에서 合理的이고 公平한 몫(Reasonable and Equitable Share)을 차지할 權利가 있다”는 公平한 利用의 原則(principle of Equitable Utilization)을 선언하고 모든 流域國家에 대하여 水質汚染을 防止할 義務를 부과할뿐만 아니라 이같은 義務에 위반하여 損害가 發生하였을 경우 不法行爲에 의한 加害行爲로 하여 補償의 效果를 明示하기 까지 한것에 比하면 단순히 環境保全에 관한 一般的인 原則의 申明에 不遜하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第21原則에서 모든 國家는 自國管轄權內에서의 活動이 他國의 環境을 害치는 일이 없도록 할 責任이 있다고 宣言하여 國際慣行的인 制限的 領土主權原則을 成文化함과 同時에 河川이 海洋汚染의 原因中의 하나라는 사실을 지적하여 河川汚染을 規制하기 위한 國際別度の 수립을 考慮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사실은 水質汚染의 規制를 위한 制度發展에서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경향에 영향입어서 第3次 UN 海洋法會議 結果 採擇된 海洋法 協約 第207條는 內陸으로부터의 汚染으로 인한 海洋汚染을 規制하기 위하여 國內法을 制定하고 必要한 措置를 取할수 있게 함과 同時에 國際機構와 國際會議를 通하여 地域의 特性開發途上國의 經濟力 및 經濟發展의 必要를 참작하여 一般的 地域的 規則을 制定하도록 明文化하고 있다 할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

6) Agreement between Denmark and Germany relating to water courses and dikes on the German Danish Frontier, Article 29. 1922. 10 L.N.T.S. 187.

7) Exchange of Notes at Ottawa, Feb. 27. 1959. 341. U.N.T.S. 4.

8) U.N., St/Leg/Ser. B/12 p.837.

9) 1972. 1. U.S.T., 301 T.I.A.S. No.7312.

본바와 같은 領土主權의 制限的 原則의 發展的 傾向은 Rome法諺으로서 “各者는 自己의 것을 이용함에 있어 他者에게 害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는 것에 기초한 國際河川에 關한 國際判例의 檢討 乃至 發展的 傾向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할것인바<sup>10)</sup> 첫째로는 トレ일 熔鑛所事件(Trail Smelter Case)이고 둘째로는 코르푸海峽事件이며 셋째로는 라녹스湖水事件(Lake Lanoux Case)이라 할수 있다. 即 첫째의 トレ일 熔鑛所 事件은 有害하고 危險한 工場 施設의 作業에서 發生한 外國法益의 侵害에 對해서는 施設國의 國際責任을 認定한것인데 캐나다의 トレ일 熔鑛所가 發生시키는 亞유산가스로 因하여 下流地域인 美國 워싱턴州 一帶의 삼림농작물에 끼친 막대한 損害에 對하여는 “美國法 및 國際法의 原則上 如何한 國家도 煤煙으로서 他國領土에 對해서나 아니면 他國領土內에 있는 財産이나 사람에 對해 손해를 끼치게 할 方法으로 自國領土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許可할 權利를 갖지 못하며 特히 事件의 結果가 重大하고 또 損害가 明白하고도 確實한 증거에 의해 움직일수 없을때에는 더욱 明白하다.

그러므로 캐나다 自治領이 國際法上 トレ일 熔鑛所의 行爲에 對해 責任이 있다고 본다”<sup>11)</sup>고 하는 判示를 美國과 캐나다 協定에 의한 仲裁裁判所가 提示했던 것이다. 둘째번의 코르푸海峽事件에서도 國際司法裁判所의 “他國의 權利에 反對되는 行爲를 위해서 自國의 領域이 이용되게 알면서는 허용하지 않을 모든 國家의 義務를 “一般的이고도 確立된 一定한 원칙(certain general and well-recognized principles)으로 밝혔는바 特히 알바니아 當局에 부여된 의무는 선박통항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알바니아 領水內의 기뢰원의 존재를 통지하고 기뢰원에 의한 急迫危險에 接近하는 英國軍艦에 경고를 주는 것이다.

이같은 의무행위는 1907년의 헤그協約 第8號에 의해서라기 보다 一般的으로 確立된 一定한 원칙 환언하면 平和時에 더욱 요청되는 人道에 對한 基本적 配慮 海上交通自由原則 및 他國의 權利에 反對되는 行爲를 爲해서 自國領域이 이용되게 알면서는 評容하지 않을 모든 國家의 義務에 立脚한 것이다. (Elementary considerations of humanity, even more exacting in peace than in war, the principle of the freedom of maritime communication, and every states obligation not to allow knowingly its territory to be used for acts contrary to the rights of other states)<sup>12)</sup>라고 判示하여 明白히 했으며 셋째번의 라녹스湖水事件은 河川의 水流變更에 關한 불란서와 스페인間의 분쟁사건인데 兩國은 1866년 Bayonne 條約 및 追加議定書에 依하여 兩國間에 國際河川의 水路를 變更할때에는 相互 協議를 基本원칙으로 한것에서 불란서의 수력발전을 爲한 水流變更은 條約違反이라고 抗辯한 스페인에 對하여 1957년의 仲裁裁判所는 內水의 使用이 水質이나 水量에 何等의 變化를 주지않는 경우의 사용은 正當한것이며 利害當事國의 事前同意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上流國家는 信義則에 따라 下流國의 利害關係를 고려해야 할 義務가 있다고 判示<sup>13)</sup>하여 制限的 領土主權의 原則을 明白히 하였다 할것이다.

10) Oppenheim-Lautepacht International law (8th ed 1955) Vol. I., p. 346.

11) Wolfgang, G. Friedmann, Oliver J. Lissitzyn and Richard Crawford Pugh,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1969) p. 747.

12) I. J. C Reports 1949. p. 22.

13) 53.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59) p. 156~169.

## 2. 大氣 및 宇宙汚染(Air and outer space pollution)

大氣汚染은 주로 自動車 航空機 및 工場의 煤煙等에서 考慮되는 것이지만 國際的 關心事가 된것은 比較的 最近의 일이라 할 수 있다. 同時에 科學發達과 國際交流의 빈번함에 따라 國際機構들이 汚染規制를 위하여 努力을 기울이는것은 否認할수 없는 일이지만 制度的인 歷史의 짧음에서 인지 所期의 目的 達成에는 아직까지 未洽하다고 할 것이다.

우선 航空機를 媒體로 한 大氣汚染問題를 보면 “Chicago 國際民間航空協約”을 검토할수 있지만 좀더 자세히 검토하면 直接的으로 言及하는바는 發見할수 없고 單只 第44條의 規定에서 “國際民間航空機構로 하여금 國際航空의 原則과 技術을 發展시키고 安全하고 능률적이며 經濟的인 비행을 원하는 全世界人類의 必要를 充足할 수 있도록 國際民間航空을 計劃하고 發展시킬것을 부과”하고 있고 또한 國際民間航空機構는 環境保全을 위하여 指導資料를 提供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大氣汚染防止를 위한 標準 指針 및 節次等を 制定할 수 있다. 그리고 萬一 大氣汚染에 관한 國際的 標準이나 節次에 全的으로 順應할수 없을 경우에는 各國이 國內的 標準과 節次와의 차이점을 國際民間航空機構에 通告할 義務를 가지며 國際民間航空機構는 항공기의 소음에 관한 標準을 이미 定하여 各國에 게 채택하도록 권고한 사실을 알수있을 뿐이다.<sup>14)</sup>

그러나 特히 蘇聯이 人工 위성 Sputnik를 처음으로 發射한 後 급속히 증가된 宇宙空間의 利用에 따른 環境汚染이 考慮의 對象에서 觀心이 높아지자 宇宙空間에 대한 大氣圈에 적용되는 傳統國際法과 區別되는 새로운 宇宙國際法의 定立이 必要할뿐만 아니라 적절한 적용은 오직 새로운 宇宙國際法에 依한 規律이어야 한다는 것이 支配的이게 됨으로써 宇宙空間에 대한 環境保全을 위한 새로운 法制度의 發展을 보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그리하여 UN總會는 “宇宙空間의 探查와 利用에 관한 國家活動을 規律하는 法原則宣言<sup>15)</sup>을 1963년 12月 13日 採擇한 것을 理解할수가 있는 바 그 主要內容의 原則은 모든 國家는 政府機關이거나 아니거나를 莫論하고 그에 의하여 遂行되는 모든 宇宙活動에 對하여 國際責任을 負擔시킨다는 原則을 明白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國家責任의 性質과 範圍에 關係서는 明示한바가 없는것이 특징적인것이라 할 수 있을것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宣言의 原則을 기초하여 各國은 物體를 宇宙空間에 發射하여 他國에 被害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할 責任이 있을뿐만 아니라 核武器 기타 大量殺傷武器의 宇宙發射禁止條項을 明文化하며 關係條約 當事國은 有害한 汚染과 地球에 不利한 環境변화를 招來하지 않도록 宇宙圈을 研究 探查하고 必要한 경우 이같은 目的 達成을 위하여 적절한 措置를 取해야 하며 宇宙活動이나 實驗이 他國에 損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考慮되는 경우에는 關係當事國은 이같은 實驗乃至 活動을 施行하기 前에 國際的 協議를 가져야 한다는 宇宙條約(The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in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sup>16)</sup>을 1967년 1月 主要國家間에 締結하는 發展을 볼수 있게됨을 注意할 必要가 있다 할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68년에는 協定當事國은 自國의 領域에서 發見되거나 아니면 다른 場所에서 回收된 物體

14) E. D. Brown, “Conventional Law of the Environment,” in Teclaff and Utton. p.36~38.

15) The Declaration of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U. N. G. A. Res. 1962, 18 U. N. GAOR. supp. 15, U. N. Doc A/st 15(1963).

16) U. S. T. 2389, T. I. A. S. no. 7762(1973)

가 有害한 경우 發射當國에 通報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通報받은 發射當國은 이같은 物體의 有害危險性을 除去하기 위하여 可能한 效果인 措置를 取할수 있다는 “宇宙航空士의 歸還 및 救助, 宇宙圈에 發射된 物體의 回收에 關한 協定<sup>17)</sup>의 成立을 納게되며 뒤이어 1972년 3月 29日에는 宇宙物體의 發射國家에 대하여 地球表面이나 비행중인 航空機에 끼친 損害에 대하여는 無過失責任을 賦課하지만 地球表面 以外에서의 被害에 대해서는 過失責任을 課할것을 內容으로 하는 “宇宙物體에 依한 損害에 대한 國際責任에 關한 協約<sup>18)</sup>을 採擇하게 된다. 그리고 가장 最近의 것으로는 달을 探査하게되는 경우 協定當事國은 달과 地球의 環境을 파괴하는 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적절한 措置를 取해야 하며 措置를 取한 國家는 UN事務總長에게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通告해야 하며 萬一 달에 放射性物質을 設置한 경우에는 可能한 限 事前에 通知해야 한다는것을 規定하고 있는 “달과 기타 천체에 대한 國家活動을 規律하는 協定<sup>19)</sup>을 UN總會가 1979年 12月 5日에 採擇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放射性 汚染(Radio Active Pollution)

放射性 物質汚染으로 因한 環境 파괴 및 汚染은 主로 核武器를 要素로 한 大量殺傷武器의 實驗이나 使用과 化學 및 세균武器의 使用 등에서 검토될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放射性 物質의 海洋에로의 投棄 또는 核物質 운반도중에서의 事故發生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探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오늘날 原子力의 核 Energy 使用의 增加에 따라 放射性 物質의 河川 또는 海洋에로의 廢棄物 投棄는 科學의 發達에 따른 地球村의 地域圈 縮少化 傾向에서 볼때 國內의인 것으로 뿐만 아니라 國際의으로도 輕視할 수 없는 重大한 문제점을 發生시킨다는 事實은 否認키 어렵다 할 것이다. 특히 放射性 物質中에서 Tritium은 그 有毒성이 長期間의 持續性으로 海洋에의 投棄는 海洋生物 資源에 危險인 것이 되며 地下에로 매장했을 경우에는 農作物 管理에 莫大한 피해를 줄 危險性 때문에 結果의으로는 人間生活基盤 그 自體로서의 環境에 危險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環境 그 自體의 保存을 排除과 同時에 파괴 및 오염현상을 克服하기 위하여 各國間의 共同努力을 볼수있다 하겠으나 個別國 自體의 見解差異<sup>20)</sup> 때문에 고무적인 것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다소간 困難하다 하지 않을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各國間에 提示되고 展開되는 共同努力 그 自體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앞으로 來到할 狀況의 對備方法으로서 檢討해 본다면 가장 最近의 것으로서 1975년 3月 26日 發効한 “生物學武器의 開發 生産 저장금지에 關한 協約(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sup>21)</sup>을 들수 있겠으나 順序에 따라 資料의 範圍內에서 검토해 본다면 放射性 物質의 海洋投棄로 因한 海洋汚染防止를 위하여 적절한 措置를 取할것을 各國에 要請

17)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18) Convention on international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space objects. 2條3條 參照.

19)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20) 1973. Australia와 New Zealand는 France의 핵실험의 中止를 위한 ICJ의 提訴

21) I. U. S. T. 583 T. I. AS No. 8052, 1972. 4. 10 조인(1975)

22) 402 U. N. T. S. 71

한 1958년의 公海에 관한 Geneva 協約을 위시하여 1959년 南極의 平和的 利用과 南極生物資源의 保存을 위하여 南極에서 核武器를 實驗하거나 放射性 廢棄物의 投棄를 禁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條約當事國은 每年 會合하여 共同 關心事를 討議하도록 한 南極條約(Antarctic Treaty)<sup>23)</sup> 1962년 Brussels에서 採擇한 核船舶이나 그 廢棄物로 因하여 人命이나 財産에 被害를 주었을 경우 그 運行者에게 無過失責任을 賦課함과 同時에 그 運行者에게 責任限度額을 1억弗로 限定하고 있는 “核船舶의 運行者의 責任에 關한 協約<sup>24)</sup>” 뿐만 且 中共과 같은 核保有國이 加入하지 않고 核武器의 使用을 戰爭目的을 위하여 禁止하고 있지는 않지만 國際社會의 超強大國인 美·蘇와 같은 主要強力 核保有國家들의 部分的인 核實驗의 禁止를 提示하며 當事國에게 大氣圈宇宙圈 水中의 어느장소에서든지 核實驗을 함으로써 放射線에 依한 環境오염 및 파괴를 禁하고 있는 1963년의 核實驗禁止條約<sup>24)</sup> 1971년 Brussels에서 採擇된 船舶所有者가 아니라 核 Energy 施設의 管理責任者에게 核物質의 海上運送途中 發生한 事故에 대하여 民事責任을 負擔시키는 “核物質의 海上運送分野에서 民事責任 分野에 關한 協約<sup>25)</sup>과 同年 海底에 核武器 및 기타 大量殺傷武器를 저장하거나 發射施設 實驗 施設 저장시설의 설치를 禁하는 “海底非核化 條約(Treaty on prohibition of the emplacement of nuclear weapon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the seabed and the Ocean Floor and in the subsoil thereof),<sup>26)</sup> 核武器의 使用禁止에 關한 核武器 非擴散條約(Treaty on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1972년 London에서 採擇한 “廢棄物 投棄에 依한 海洋汚染의 防止에 關한 協約 및 同年大氣圈에서 行해지는 核武器 實驗을 非難함과 同時에 核實驗國家로 하여금 人類의 環境을 더욱 汚染시키는 核實驗 計劃의 포기를 要請한 UN人間環境會議에서의 核武器實驗에 關한 決議案(Resolution on Nuclear Weapons Test) 等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第3次 海洋法會議以來로 成案 採擇된 海洋法 協約에서도 海洋環境의 保存은 勿論 파괴와 오염의 극복을 위한 條句에서 많은 條句 이틀테면 第 193條에서 부터 第225條까지를 볼 수 있지만 放射性 汚染의 規制<sup>27)</sup>를 위해서는 다소간 未洽하다는 點을 否認키는 困難하다 할 것이다.

#### 4. 海洋汚染(Marine pollution)

海洋環境파괴 및 汚染의 原因에 關하여는 여러가지 重要要素가 검토되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分類 體系化하면 出處에 依한 汚染 乃至 파괴의 형태로서 ① 陸上起因 汚染, ② 船舶汚染<sup>28)</sup>, ③ 海洋投棄汚染, ④ 海底의 探查 및 開發로 因한 汚染, ⑤ 空氣로 因한 汚染과 原因에 依한 형태로서, ① 運行上 汚染(operational pollution), ② 事故汚染, ③ 廢棄物 處理에 依한 汚染<sup>29)</sup>으로 分類하여 검토

23) 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operators of Nuclear Ships. 57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68(1963)

24)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480. U. N. T. S. 43.

25)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f Nuclear Material II.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277(1972)

26) I. U. S. T. 701., T. J. A. S. No. 7337(1973)

27) 第3次 海洋法 會議에서 採擇된 海洋法 協約 第194條 1項, 2項, 4項 參照.

28) U. 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211조 ~217조 218조 220조 參照.

29) G. J. Timageris, International Control of Marine Pollution, Vol. 1, p. 16~19.



토되고 있다 할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것으로 下水, 工場으로부터의 廢油와 廢棄物, 農地에 使用한 化學藥品等の 바다에로의 流出이라는 陸上起因 汚染과 船舶乃至 運行上의 汚染 換言하면 船舶의 航行中에 生하는 海上事故에 依한 油類 流出에 因한 海洋 汚染 그 中에서도 오늘날 大型 유조선의 난파로 因한 海洋 汚染의 可能性 即 具體的으로는 1967년 3月の 119328屯의 Torrey Canyon 號의 原油事故와 1978년 3月の 223000屯의 Amoco Cadiz 號의 原油事故等과 海底開發 過程에서 惹起되는 海洋의 汚染이라 할 수 있는 바 이같은 原因에 依한 海洋汚染의 規制는 原來 海洋에 있어서의 公海自由原則에서 볼때 매우 심각성을 나타내지 않을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나 海洋 역시 人間의 慾求充足 乃至 生存의 기초가 되는 環境의 하나이며 生態系의 保有를 追求하는 限 特定の 國家가 海洋環境을 파괴 乃至 汚染시킴으로써 他國의 公海使用의 自由原則을 侵害하거나 制限할수는 없는 것이므로 公海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國家가 自由롭게 使用할 수 있는것으로 考慮하면서도 公海에 관한 協約<sup>30)</sup>은 “모든 國家는 公海를 自由롭게 使用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他國의 利害關係를 合理的으로 考慮해야 한다”고 規定하며 이같은 法理는 “領海 및 接屬水域에 關한 協約”의 無害通航權에 關한 沿岸國의 權利面에서도 벗날수 있다 할것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檢討하면 前示協約 第14條 同16條 同17條에서 沿岸國이 領海內에서 海洋汚染을 規制할 管轄權이 內包되어 있다고 明定하지는 않고 있지만 無害通航의 概念的인 解釋의 立場에서 볼때 航行하는 外國船舶에 對한 海洋環境의 保存 및 保護를 위한 國際的 管轄權을 充分히 理解할수 있다는데는 異議가 없을것이라 보아지며 特히 沿岸國의 接屬水域에서의 關稅 財政 出入國管理 乃至 衛生法規의 國際的 管轄權 作用<sup>31)</sup>은 이를 補完함에 充分하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10여년간 會議과 討論이 계속되다 終結된 第3次 海洋法會議의 結果 채택된 海洋法 協約 第23條의 “Foreign nuclear-powered ships and ships carrying nuclear on other inherently dangerous or noxious substances shall, when exercising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through the territorial sea, carry documents and observe special precautionary measures established for such ships by international agreements”와 第25條의 “The coastal state may take the necessary steps in its territorial sea to prevent passage which is not innocent” 亦是 1958년의 領海 및 接屬水域에 關한 協約內容을 답습하고 있음에야 再言을 不要한다고 할수 있을것이며 特히 同協約의 進行過程에서 論議된 海洋環境의 保護와 維持에 關한 취지를 概略적으로 보면 모든 國家는 汚染防止에 必要한 科學的 技術的 情報를 開發途上國에게 提供하여야 함은 勿論 汚染을 防止할 一般的인 義務를 負擔하며 國際的 規則標準 節次를 결정함에 있어 汎世界的으로나 地域的으로 協力하여야 한다고 까지 했든것이다.

그리하여 協約은 一般的인 船舶으로부터의 汚染(第211條)에 對한 旗國의 權利(第217條)를 認定하면서 寄港國(第218條)과 沿岸國(第220條)에게도 一定한 範圍內에서의 管轄權 行使를 明定하는 것은 보다 發展的인 傾向이라 할것이나 海洋環境 그 自體를 地球村이라는 汎世界的 環境保護次元이 아닌 個別國家의 利害의 觀點에서만 考慮하는 경우에는 規制의 管轄權의 主體自體가 環境 파괴와 汚

30) 1958년 Geneva 協約 第2條 參照.

31) 1958년 Geneva 協約 第24條 1項 a, b 參照.

染에 대하여 下手人도 될 수 있고 救濟人도 될 수 있다는 것에 留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狀況에서도 海洋環境 그 自體가 生態系의 한 要素임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大陸棚에 관한 協約”에서도 “연안국은 大陸棚의 開發이 航行, 漁業 또는 海洋生物資源의 保存을 不當하게 妨害해서는 안되며 大陸棚의 開發에 當하여 施設物 保護를 위한 安全水域을 設定하는 경우 그 水域內에서는 有害物質에서 부터 海洋生物資源을 保護하기 위한 모든 必要措置를 取해야 한다<sup>32)</sup>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汚染防止를 위한 管轄權 行使의 留保를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sup>33)</sup>

### 三. 環境汚染規制를 위한 制度的 檢討

#### 1. 汎世界的 機構와 地域的 機構

환경파괴나 오염의 경우 一國의 國境을 넘어 他國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大氣汚染이나 海洋汚染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같은 경우 環境을 保護하고 保全함에 있어서는 國家的 次元의 關心단으로는 多元化的 國際社會에서 效果를 確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오늘날 UN體制內와 體制外에서 環境파괴 및 汚染의 克服에 從事하는 國際機構로서는 大體로 汎世界的 一般的 機構로서 政府間海事協議機構를 비롯한 UN環境計劃機構를 으뜸으로 할 것이며 地域的인 機構로서는 經濟協力開發機構를 代表的인 것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좀더 具體的으로 검토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汎世界的인 一般的 機構

1972年 6月 人間의 環境을 改善하고 保護하기 위한 UN人間環境회의가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어 “人間環境宣言”과 “行動計劃”이 採擇되었는 바 UN總會는 이 會議의 권고에 따라 1972年 12月 15日 UN環境計劃(U. N. E. P)을 設立하게 되었는데 연유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UN體制內에서 發展的인 形象에서 環境오염을 防止하고 環境을 保全하는 UN의 여러 專門機構에서 본다면 오히려 1959年 London에 本部를 두고서 國際海運業務에 관한 政府間의 協力을 目的으로한 政府間 海事協議機構의 發足에서 그 淵源을 發見할 수도 있음을 留意할 必要가 있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IMO는 설립 직후 1954년에 締約된 “油類汚染防止協約”의 寄託業務를 擔當하여 油類排出에 의한 海洋汚染防止에 注力하였기 때문이다. 그後 1960년에는 油類에 의한 海洋汚染의 現況을 파악할뿐만 아니라 그 規制方法을 위하여 世界的 規模의 실태조사를 行하며 1962년에는 1954년의 協約 自體를 修正하기에 이르며 특히 1967年 Torrey Canyon 號의 事件發生에 影響입어 諸種汚染防止措置를 권고하기에 이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1969年 11月 Brussels의 會議結果 “公法條約과 私法條約의 締結권고”에 이르며 1973년에는 “船舶으로 부터의 汚染防止協約”을 締結하도록 주선하게 되며 海洋環境保全委員會(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를 설치하여 船舶으로 부터의 諸種汚染의 規制를 위한 積極的인

32) 大陸棚에 관한 協約 第5條 및 海洋法協約 第66條77條4項 參照.

33) Brownlie, op. cit., p. 8.

任務 및 活動遂行에 當하여 現在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UN環境計劃이 더욱 強調되는 理由는 이 計劃의 根本目的에서 “環境分野에 있어서의 國際協力を 促進하며 世界의 環境狀態를 恒常 改善함으로써 各國政府가 적절한 措置를 취할수 있도록 하며 環境汚染에 관한 知識을 습득 평가 교환하는데 있다<sup>34)</sup>고 하는 “보다 汎世界性에서 찾아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그 主要任務를, 必要한 環境政策의 권고, 一般政策指針의 提供, 環境計劃에 관한 總裁의 定期報告書 檢討等으로 하며 1974년에는 “國際環境法”을 促求하는가 하면 1975년에는 開發途上國의 要請이 있을 경우 國內 環境立法을 위한 技術的인 援助賦與를 總裁에게 要請하는 事實이다.

이 以外에 1944年 國際民間航空의 安全과 發展을 위하여 Chicago 國際民間航空條約에 根據한 國際民間航空機構가 超音速航空機의 噪音을 감소키 위한 許容基準의 設定 및 航空機소음 위원회 設置에 의한 航空機의 소음방지와 감소를 위한 國際基準 定立으로 各國의 航空機가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과 氣象에 관한 技術的인 國際協力を 위한 專門機構로서의 世界氣象機構(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諸種 大氣汚染源을 地域的으로 測定하기 위한 計劃을 수립하여 大氣汚染에 의한 氣溫의 變化 可能性은 勿論 大氣汚染의 海洋環境 및 汚染에 관한 研究遂行이다.<sup>35)</sup> 그리고 大氣汚染 騒音 水質汚染 農藥汚染등이 人間의 福祉 및 健康에 미치는 影響을 검토하는 世界保健機構와 食品에 含有된 有害物質(방부제 농약等等)의 許容值를 國際的으로 標準化하고 農藥規制를 위한 農藥의 副作用에 관한 資料를 樹立하는 食糧農業機構등이라 할것이다.

## (2) 地域的 機構

環境保護 및 파괴극복을 위한 地域的 機構가운데서 古典的이면서도 典型的인 것으로는 Rhein江의 汚染을 規制하기 위한 目的에서 1815年 Wien會議에 의하여 設立된 “Rhein江의 航行에 관한 中央委員會(Central Commission for the Navigation of the Rhein)로서의 國際委員會라 할수 있을 것이나 Rhein江의 汚染問題 本質이 航行으로 부터 惹起되는 경우에 限定되었기 때문에 環境保護目的을 위한 委員會의 權限에 限界가 明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汚染防止를 위한 措置를 全員一致制에 依存하고 또한 同委員會의 措置에 대한 採擇與否는 個別各國政府의 影響下에 있었으므로 效果面에서 그 미흡성을 노정한것이 特徵<sup>36)</sup>이라 할수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보호를 위한 地域的 機構中에서 어느정도 괄목할 정도의 成果가 있는 것으로는 五大湖의 水質管理를 위하여 美國과 캐나다國間에 체결된 條約에 의한 國際共同委員會(International joint Commission)를 들수있다. 國際共同委員會는 兩國間의 國境問題를 處理하고 國境水域의 使用에 관하여 紛爭處理를 위한 廣範한 管轄權을 保有할뿐만 아니라 國境水域을 汚染시켜 他國의 財産이나 健康에 損害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規定한것은 特記할만 하지만 이 條約 自體가 汚染防止를 위한 具體的인 標準 指針 目標를 設定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1969年 國際共同委員會의 最終報告書에 의하여 汚染防止를 위한 諸種 권고를 행할 程度여서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수 없을것이다. 그렇지만 1972年 美國과 캐나다國間에 五大湖水

34) J. G. Starke, A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8th ed., 1977, p. 437.

35) David, A. Davies, “The Role of the WMO in Environmental Issu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26, No. 2, Spring, 1972, p. 329.

36) Robert, E. Stein, The Potential of Regional Organizations in Managing Man's Environment, 1972. p. 265.

質協定을 締結하는데 強力하게 影響을 미칠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水質目標을 設定할수 있었다는 點에서 進一步한것으로 評價된다고 할것이다.

이 以外에도 1969年 NATO에 의하여 設立된 現代社會의 挑戰에 관한 委員會(Committee on the Challenges of Modern Society)는 環境문제에 관한 研究 및 資料收集, 油類에 의한 海洋汚染 水質汚染 大氣汚染, 藥品汚染(誤用)等과 같은 문제에 作用하여 良好한 人間環境을 위하여 同盟國의 見解와 經驗을 相互交換함은 勿論 加盟國政府의 積極的인 行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大氣汚染 및 規制方法에 관한 研究는 勿論 自動車 排氣가스에 의한 汚染防止를 위하여 排出許容值의 基準 및 規則을 制定하며 1979년에는 “國境을 橫斷하는 大氣汚染에 관한 協約 締結에 크게 寄與한 구라과 經濟委員會도 있는 것이다. 또한 大體的으로 先進工業國으로 構成되는 “經濟協力開發機構”도 環境문제의 經濟的 面에 매우 積極性을 環境위원회로 하여금 大氣汚染管理 水質管理 都市環境管理에 活動的 指導를 하여 1971년에는 ① 環境政策의 國際經濟的 意味檢討, ② 製紙業者로 因한 汚染과 自動車에 의한 都市環境汚染研究, ③ 環境規制措置의 早期通報를 위한 자문기구의 設立等과 같은 計劃을 提示하기까지 하였든 것이다.<sup>37)</sup>

## 2. 國際法規와 國內法令과의 連繫性

國際環境法の 發達段階는 世界的 地域的 國家的이라는 3段階에서 特定の 過程的 行動을 取할 必要性에서 理解할수도 있을 것인즉 世界的인 條約의 경우는 모든 國家에 開放된 一般的인 外交會議에 參席 交涉 受諾 加入을 通하여 設定되게 되며 모든 關聯國家에게 受諾될 수 있는 普遍的 可能性에서 理解할수 있다 할것이다.<sup>38)</sup> 이에 대하여 地域的인 條約은, 規模面은 國際的이지만 대개의 경우 特定地域의 國家에 의하여 交涉되어 비준 또는 受諾되며 어떤 경우에는 特定地域 그 自體의 海洋環境保護乃至 保存에만 關聯을 가질수도 있는 것이어서 빠른 採擇 및 効力發生은 勿論이고 特殊한 地域性에 調整이 容易하게 될수 있다는 長點도 있으나 普遍的으로 不배 統一된 規範的 作用을 하기에 未洽하다는 短點도 留意할 必要가 있다 할것이다.

이를테면 海底探査 및 開發로 因한 汚染 파괴 및 投棄로 因한 경우와 같이 汚染의 出處가 地域化的 性格의 것일 경우에는 적절할지 몰라도 세계적인 관심의 對象으로서 船舶에 의한 汚染의 경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國內立法의 경우에는 國際條約 그 自體를 補完하기 위함이 거나 또는 効力發生을 위하여 아니면 國際法規가 考慮하지않고 있는 各種의 環境法 分野와 關連하여 關係國家의 管轄權內에서 이같은 問題를 處理하기 위하여 行할때 考慮할 수 있는것으로서 特定한 事項에 대해서는 보다 効果의 일수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一般的인 環境 파괴 및 汚染의 극복을 위한 環境問題에 대한 前述의 3段階的 類型의 法的 接近은 多種한 水準에 있어서의 法規間에 問題點을 提起해 준다고 할것이다.

그래서 世界的이고도 地域的인 條約間의 關係는 大部分의 경우 條約上에 差別待遇없음이라는 형태의 規定을 두고 있어서 條約의 關聯條項의 解釋問題로 理解되게 되어 一般的 傾向은 地域的 條約

37) John, L. Hangrove, Law, Institutions and the Global Environment, 1972, p. 262.

38) Timageris, op. cit., Vol. 1, 1980, p. 40.

이 世界的 條約에 우선하는 경우에도 世界的인 性向에 合致하는 方法에 의하여 解釋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國內·國際法規間의 相關關係問題도 이같이 取扱되어야 할 것이다.<sup>39)</sup> 그렇다면 環境汚染에 관한 國際環境法과 關聯하여 볼때 國際法과 國內法에 관한 國際法의 一般的인 경우와는 달리 國內·國際的인 環境法規間의 關係에는 다음과 같은 特殊問題가 發生할것임을 豫期할 수 있을 것이다. 換言하면 環境汚染協約의 當事國이 協約內容보다 엄격하게 아니면 더욱 相異한 內容으로써의 措置를 할 수 있느냐는 것과 國內·國際協約間의 關係가 海洋法協約을 媒體로 하여 環境汚染에 관한 最小限의 水準(Minimum level)<sup>40)</sup>을 創設하려는 形象을 엿볼수 있을 경우 이같은 最小限의 水準이 國內立法에 대하여 어떠한 效果를 發生하느냐이다.

前者의 경우는 이를테면 1972年의 投棄에 관한 London 條約第4條3項의 “當事國이 關聯을 갖고 있는 範圍內에서”와 같은 規定이 있을 경우 當事國이 엄격한 措置를 採擇할 可能性을 規定하고 있다고 認知되므로 當事國間에 適用되는 條約法規를 害치지 않는 範圍內에서 最小限의 基準을 設定할수 있을 것이며 特定한 경우에는 同等効力이나 一定한 判斷基準의 範圍內에서 變形된 措置가 可能하다 할 것이다.<sup>41)</sup> 그러나 아무런 엄격조치를 採擇할 可能性이 規定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程度와 範圍內에서 더욱 엄격하거나 아니면 더욱 相異한 措置를 할수있을 것인가 하는 問題는 單純히 條約 그 自體의 解釋問題로 理解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關聯된 利害關係의 均衡을 取하거나 아니면 一般國際法을 適用하여 個別的인 解決을 圖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後者의 경우는 單純히 國家가 主體的 立場에서 國際法規를 考慮範圍內의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國內立法의 形式을 國際法으로써의 締約形式에 뒤지지 않는 効力(No less effective)의 것으로 考慮하여 이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때 國內法과 國際法이 調和를 어떻게 이루면서 相互 滿足한 協力關係를 維持 補完하느냐 하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할 것이며 長期間에 걸쳐 論議를 거듭한 나머지 採擇된 UN海洋法協約 特히 第193條에서 부터 第 225條까지의 海洋環境汚染 및 파괴의 克服을 위한 原則 下에 國內法의 世界的인 統一化가 期待된다 할 것이다.

#### 四. 結 語

人間이 生存하고 있는 地球村의 環境은 累增的인 人口增加와 發達하는 科學知識에 基盤을 둔 現代의 産業規模의 팽창으로 環境의 파괴 및 汚染은 急激히 增大되고 있어서 生態界의 危脅은 人類의 歷史發展과 더불어 加重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環境의 保存 및 保護는 勿論 그 파괴 및 汚染으로 부터 解放하기 위한 國際環境法의 必要는 絶실하다 할 것이며, 그 發展을 위한 努力은 일순이라도 中止할 수 없을 것인즉 그 發展을 위한 探索의 一方法으로서 그 過程을 考察하면 國際環境法의 基本은 國際水路法을 위시하여 海洋法 과 環境파괴 및 汚染에 대한 國家責任의 國際法的 次元에서 求할 수 있을것이나, 보다 根源的인것은 諸種國際環境法의 設定에 초석이 되었던 慣習國際法을 輕視할수는 없을 것이다.

39) Timageris, Ibid., p. 41-42.

40) Timageris, Ibid., p. 48.

41) Ibid., p. 48.

오늘날 國際環境法은 水質의 側面 및 大氣의 側面에서 그리고 海洋의 側面에서 特히 放射性 物質 및 油類의 海洋投棄行爲에서 國際條約을 通하여 나날이 發展하고 있어서 *Lex Ferenda*의 境地에서 *Lex Lata*의 傾向으로 變容하고 있음을 注意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환언하면 水質汚染規制의 경우 단순한 法諺으로서의 *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라는 慣習的 形式에서 制限的 領土主權 原則에 기초를 둔 諸種의 國際條約과 國際河川을 使用함에 있어서 上流國은 下流國의 利害關係를 考慮할 必要가 있다는 國際判例에 의하여 支持되는가 하면 國際法協會는 國際河川의 汚染防止를 위한 標準으로서 1966年의 *Helsinki* 規則으로 採擇된 “公平의 原則 利用”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本論文에서 引用 提示한 *Trail* 熔鑛所 事件 *Corfu* 海峽事件 및 *Lanoux* 湖水事件에 관하여 確立된 國際判例의 原則은 모든 國家는 他國 領土內의 財産에 대하여 다시말하면 他國의 環境을 파괴하여 被害를 입힌 경우에는 國際責任을 不免한다는 宣言的인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1972年의 *Stockholm* “人間環境會議”의 人間環境宣言은 環境汚染의 경우에 國家責任原則을 明文化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며 國家責任負擔의 경우에 있어서도 責任理論의 發達에 영향입어 無過失責任의 法理으로 變轉하는 傾向은 漸增하는 原子力의 利用과 國家間의 利害對立에서 그 重要性이 強調되는 宇宙開發 및 利用의 場合에서 매우 기뻐해야 할 일로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大氣汚染의 規制를 위한 國際環境法이 地域的 機構의 역할에 힘입어 尤황에 의한 大氣汚染規制의 多者條約으로써 共同研究 情報交換 및 觀測等を 明示하는 1979年의 “國境을 橫斷하는 長距離 大氣汚染에 관한 協約”의 締約으로 發展하는것 또한 宇宙開發의 利用加重性이란 點에서 볼때 輕하해도 좋을 것이다. 特히 海洋의 側面에서 볼때 公海自由의 原則에서 海洋環境의 파괴 및 汚染의 克服을 위한 國際環境法의 規制作用이 合理的이라고 할 수 없을 경우도 考慮될 수 있겠지만 1958年의 公海에 관한 協約이나 아니면 領海 및 接屬水域에 관한 協約 및 大陸棚에 관한 協約에서 他國의 公海使用을 妨害 내지 억제할 程度로 海洋環境을 파괴하거나 汚染시키는 行爲는 合理的인 것이라고 理解될 수 없다는 論理的 歸結判斷은 國際環境法의 發達 및 그 定立을 容易하게 할 뿐만 아니라 加速시킬 수밖에 없다는 結論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954年의 “油類에 의한 汚染防止 條約” 1969年의 “油類汚染의 場合에 있어서 公海上에서의 干涉에 관한 條約”과 同年의 “油類汚染으로 인한 民事責任에 관한 條約” 1972年의 “廢棄物 및 기타 物質의 投棄에 의한 海洋汚染防止 協約” 1973年의 “船舶에 의한 汚染防止條約” 1974年의 “陸地起因의 海洋汚染防止協約” 등은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을 위하여 매우 重要한 宣言的 成文形式이라고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海洋法 第207條에 의하면 陸上에서의 汚染의 場合에는 國內法에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國際法規에 부합할 수 있도록 法制定을 要求하고 있고 同條約 第 208條에는 國內管轄權下에 있는 海底活動으로 인한 汚染에 대해서는 沿岸國에 法制定권이 賦與되고 있지만 國際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同協約 第210條에 의하면 海洋投棄에 관해서도 陸上에서의 汚染 및 海底活動으로 인한 汚染의 場合와 유사한 方法을 採擇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同協約 第211條에 依據하면 船舶으로 인한 汚染에 대해서는 旗國과 沿岸國間의 管轄權의 調和를 試圖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大氣圈으로부터의 汚染에 대해서는 陸上에서의 汚染과 船舶에 의한 汚染間에 調和를 試圖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環境保存과 保護를 위해서는 汚染出處의 多樣性을 中心으로 하여 對內的 地域的 對

外的 水準에 의한 法制度 相互間的 有機的 協力아래에서 効果的으로 對處하고 考慮해야 할것이다.

### 參 考 文 獻

- 李丙朝·李仲範 共著 國際法新講 一潮閣 1983.  
具然昌, 環境保全法, 三英社, 1981.  
柳炳華, 國際法總論, 一潮閣, 1983.  
Don Walsh: The Law of the Sea, Praeger, 1977.  
Richard, G. Hildreth and Ralph, W. Johnson: Ocean and Coastal law, Prentice, 1983.  
E. D. Brown: Conventional Law of the Environment.  
Ian Brownlie: A Survey of Int'l Customary Rul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udwick, A. Teclaf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1974.  
G. J. Timageris: International Control of Marine Pollution.  
Robert, E. Stein: The Potential of Regional Organization Managing Man's Environment, 1972.

